

## ◆ 양록세미나 ◆

# 사슴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정책지원과 경영개선 방안(下)

이 근 상  
축산시험장 장



### 3.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

- 사슴과 양록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려는 기술적 방안이라면 우선 사슴의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인 사양관리 및 경영개선에 의한 생산비 절감 그리고 양록산물의 품질향상에 의한 수요확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정책적인 지원방

안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양록자 스스로의 공동참여 의식과 최선의 자구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 가. 사슴의 품종개량에 의한 생산성향상

##### (1) 우량종록의 입식

- 국내산 사슴은 오랫동안의 균친번식등으로 인한 생산능력의 저하가 필연적임 → 특히 고도의 균친번식은 유전능력을 크게 떨어지게 함

- 국내산 우량사슴의 구입이나 혈액개신용으로 상호 교환 임식방안 강구도 필요함
- 외국산 사슴수입시는 반드시 우량종록의 수입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한다. 우량종록과 일반종록이나 교잡종 사슴가격은 큰 차이로 거래된다.(표9 참조)
- 우량종 사슴사육은 사슴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여 경쟁력제고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임
- (2) 종간 또는 품종간 교잡종 생산
  - 가축의 생산능력은 일반적으로 순종보다는 교잡종들이 잡종강세 효과로 크게 향상되며 외국에서도 실용축으로서 잡종생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음
  - 교잡종 생산은 종간 또는 품종간 교배 또는 윤활교배방법이 실용화되고 있음
  - 품종간 또는 소형종과 중형종, 중형종과 대형종의 교잡종은 표 10,11에서와 같이 녹용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사슴의 체구(체중)도 현저하게 커져 녹육 생산량도 현저하게 증대될 것임(녹육생산방안)

표10. 꽃사슴의 품종간 교잡 효과

구 분	꽃 사 습	꽃사슴×우량종목	우 양 종 목
녹 용 생 산 량 (kg)	0.87	1.18	1.50
지 수 (%)	100	137	172
체 중 (kg)	90	110	130

표11. 레드디어와 엘코종교잡 효과

구 분	레드디어	레드디어 × 엘크	엘크(뉴질랜드)
○ 녹용생산량(kg/두)	2.65	3.39	4.39
지 수(%)	100	128	166
○ 체중당녹용생산량(g /1kg당)	12.8	13.9	15.0
지 수(%)	100	109	117
○ 체 중(kg)	206	244	292

(뉴질랜드 양목협회지, 1987)

#### 나. 사양관리 기술개선에 의한 생산비 절감

##### (1) 선호하는 조사료 다급과 적정량 급여

- 사슴은 종류에 따라 조사료의 선호도가 크게 다르다(야생상태에서)

꽃사슴·레드디어 → 관목류  
(60)>광엽초류(30)>야초류  
(10)  
엘크 → 야초류(50)>광엽류  
(40)>관목류(10)

- 조사료를 다급하고 농후사료는 보충사료로서 급여하는 것이 이상적임

- 사슴은 계절변식을 하는 초식동물로서 사료 채식량이 계절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겨울철은 현저하게 적어지고(비활동기) 봄부터는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채식량이 늘어나면서 여름철은 현저하게 많아진다.

- 사사시는 충분한 조사료의 확보와 광물질 사료를 자유채식토록 급여한다.
- 사슴에 대한 적정 사양관리는 사슴의 번식률과 육성률이 크게 향상되고 녹용의 생산량도 증대되므로 생산비 절감효과는 표 12에서와 같이 현저하다.

##### (2) 충분한 운동과 방목사육

- 사슴은 암성이 강하고 활동적임
- 최대한의 넓은 운동장 설치로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충분한 운동은 사슴의 골격발달과 건강유지로 생산성을 크게 높혀 준다.
- 가능한한 시사에서 방사법으로 전환 유도시킨다.

**표12. 사슴의 사양관리 개선효과**

구 분	관 행	개 선
번식률 (%)	70	90
육성률 (%)	75	90
녹용생산량 (kg / 두)	0.87	1.2
생산사 (천 원 / 한 량)	30.0	20.0

##### (3) 산지의 임간방목 허용

- 사슴은 원래 야생동물로서 넓은 산지나 초원에서 사육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생산비용도 적게 든다.

- 농림수산부의 소임간방목허용지

- 침 제9조(대상가축)에는 한우 육우 유우로 되어있으나 사슴도 추가 포함시켜 허용토록해야 한다.
- 임간방목지의 견고한 울타리 설치와 보호시설비등의 지원방안 도 필요함
- 라. 경영개선에 의한 생산비절감
- (1) 양록업의 협업화와 경영규모확대
    - 지역별 협업화로 새기술 및 유통정보의 교류 → 물자의 공동구입과 산물의 공동판매
    - 부업형 사육규모를 가족노동 중심의 전업형 규모로 점진적인 확대유도
  - (2) 조속한 양록산물의 유통체계 확립
    - 농가생산 녹용 녹혈의 농가판매 허용 현실화조치
    - 생록 녹혈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확대 홍보강화로 적정가격의 판매 유도
    - 국내산 생용의 수집과 1차가공 공동판매사업 추진 허용 →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건조 가공시설 설치운영
  - (3) 양록업의 경영분석과 진단
    - 뚜렷한 경영목표설정과 운영방침 결정 → 운영의 합리화(목표 달성)
    - 경영기록장의 비치와 비목별 면밀한 기록 → 수익성 분석(경영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경영의 진단지표와 기준설정
- 다양한 경영진단(내부와 외부비교, 표준 또는 평균비교등)으로 문제점의 도출 요인분석 → 경영 개선(생산비절감)
- 마. 사슴사육의 기술개발과 지도사업강화
- 사슴에 대한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전무상태 또는 극히 미흡함
    - (1) 국립연구기관의 시험연구사업 추진형황
      - 축산시험장 육우과에서 90년도부터 착수 → 전담부서 없음
      - 농촌진흥청에서 대학과의 산학 협동 공동연구과제로 책정 일부 추진중임(91~92)
      - 시험연구강화와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사슴연구 전담인력 증원배치(92)하며 연구전담부서설치 (가칭 특수가축과)는 계속 추진 할 것임
    - (2) 사슴사육 기술지도 사업강화
      - 특수가축사육(사슴) 표준영농교본 제작 발간 배부(90년도 농진청)하였음
      - 영농후계자 사슴반 과정 설치 교육실시 기술지도 중임
    - (3) 대학에서의 사슴교육과 연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요망됨

- (4) 양록협회 산하 양록연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 양록연구회 구성 발족('89)
  - 양록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청됨 → 연구 기금 조성 등
  - 현지 사육농가 상태조사분석 및 기술지도

## 4. 사슴 수입개방에 따른 정책 적지원 요망사항

### 가. 양록업에 대한 확고한 수급과 가격 안정정책 방향제시

- 사슴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인  
가축으로 전환되었음
- 사슴과 사슴생산물의 수입개방으  
로 이의 수급과 가격안정의 제도  
적 장치와 방향 제시가 시급한 실  
정임

#### (1) 대기업의 양록업 참여금지로 전업농 육성지원

- 양록업도 새농가 소득원으로 발  
전 육성하기 위하여 양돈업이나  
양계업과 같은 대기업의 양록업  
참여 규제방안이 필요함
- 부업형 양록업 규모를 가족단위  
의 전업형 규모로 육성지원 →  
사슴의 품종별 규모설정(현재  
호당 평균사육 두수 : 농수산통  
계 9.2두, 협회자료 15.8두)

- 우선 값싼 사슴수입이 대기업  
참여 강력 규제 → 실수요자 또  
는 생산자단체 참여

#### (2) 양록업의 등록 허가제로 수급조절 유도

- 사슴사육의 등록 허가기준 두수  
의 설정(예 : 양돈업의 등록기준  
두수 : 모돈 100두이상, 허가두  
수 : 모돈 500~1,000두임)
- 수급조절 필요시는 감축 또는  
초과시 사육부과금의 부과등 조  
치강구

### 나. 사슴의 무질제한 수입 · 자체 촉구

- (1) 사슴수입은 최소한의 우량종록 위  
주의 수입으로 자체 촉구시켜야  
함. 제한적인 우량종록의 수입은  
국내 사슴의 혈액갱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시  
급함
- (2) 우량종축수입은 반드시 국내외의  
정확한 사슴사육현황이나 종록의  
능력시세 등에 관한 사전정보 및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함
- (3) 사슴수입시는 실수요자나 생산자  
단체 이외의 기업 또는 수입상들  
의 대량 수입만은 최대한 규제토  
록 공동노력한다. 물론 수입대상  
국에서의 무제한의 대량수출은 없  
을 것으로 판단됨(녹용시장의 축  
소)

## 다. 수입사슴의 철저한 검역과 관세율 조절

### (1) 엄격한 검역실시

- 농림수산부의 사슴 및 그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을 기히 고시하여 엄격한 검역과 검사실시를 발표한 바 있음
- 수출대상국에서의 구제역 무역 우폐역 등 무서운 인수공통전염병이 없어야 하고 사슴의 결핵, 부루세라, 요네병, 스크레피 등 질병감염이 없는 목장에서 사육한 사슴으로 제한되어 있음
- 검역과 검사에 앞서 수입대상국과 사육농장에 대한 각종질병의 발생실태를 사전 조사후 수입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 국내 검역시설이나 기능 범위안에서의 철저한 검역과 검사 실시만이 자연적인 수입물량의 규제 및 조절이 가능하다고 봄
- 국내 사육사슴에 대한 각종질병의 정기적인 검사로 질병발생의 예방과 녹혈의 세균감염파동 등의 재연 방지 대책 강구가 필요함(양록인의 자발적인 참여 필요)

### (2) 수입사슴에 대한 관세율 상향조정

- 국내 사슴가격과 수입사슴가격의 차액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적정선까지의 상향 조정으로 국

내 사슴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 관세율 차액 또는 가격조정차액은 양록산업발전 기금으로 전환시켜 지원 확대를 시도하여야 함

## 라. 국내산 녹용의 불공정 과세시정

### (1) 생용의 축산물화 조치

- 사슴은 축산법에 특수동물이 아닌 가축(기타가축)으로 명시된 바 사슴의 주생물인 녹용도 비가공 천연상태에서는 축산물로 규정되어야 한다.
- 축산법 제2조 3항에서 축산물이라함은 가축에서 생산된 육 유난, 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 포함)원모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한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조항에 생용을 반드시 추가 명시토록 축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2) 부업규모 양록업의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에는 농가의 부업규모 축산법위에는 소득세를 면세하고 있음(예 : 젖소 25두, 소30두, 돼지 200두, 닭 10,000두 등)
-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3항(사업소득) 동법시행령 제6조 2항 관련 별표3에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는 소, 젖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등 모든 가

축이 포함되어 혜택을 받고 있거나 “사슴”은 누락되어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임

- 관련법의 개정 또는 관련부서와의 이해촉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면세토록하여 양록업도 육성 지원되어야 한다.

### (3) 국산녹용의 특별소비세 비과세

- 녹용에 대한 세법은 현행 특별 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에서 자양강장품으로서 인삼, 녹용, 로얄제리 해구신 등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을 과세토록 되여 있음
- 또 한편으로 인삼은 가공품만 과세대상이고 비가공 원삼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로얄제리도 비가공 천연산은 제외되고 있는바 녹용도 비가공 천연상태의 생용만은 당연히 인삼이나 로얄제리와 같은 농산물의 제1차 생산물인바 특별소비세의 비과세 품목으로 지정토록하여 양록산물의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 이상과 같은 생용의 불공정 거래나 과세로 인하여 사슴사육두수나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싶다고 본다.

## 5. 맷는말

첫째, 우리나라의 사슴사육도 이제는 모두가 특수동물로서의 단순한 사육개념에서 탈피하고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서의 주요 가축임을 재인식하면서 안정된 양록산업으로서 정착시켜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된다.

둘째, 사슴수입의 자유화에 따른 정부의 확고한 경쟁력제고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양록업의 정착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슴의 무절제한 수입만은 강력히 규제하고 우수종록위주의 수입을 권장 조정토록하면서 사슴도 다른 가축과 동일한 보호아래 부업규모의 양록업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조치와 비가공 생용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비과세등 불공정 과세정책을 시정해 주고 한편 생용만은 축산물로서의 균형된 유통과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규제 조항을 해소하는 등 가시적인 보호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끝으로 양록인도 모두가 사슴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는 자구책으로서 사슴의 생산성향상과 사양관리 기술개선 및 합리적인 경영으로서 생산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사슴과 양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시책 수행에 동참하여 최대한의 협조가 요구된다. 끝